직 제 규 정

목 차

제1장 총	-칙1
제1조	목적
제2조	적용범위
제2장 구	·성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제3조	임원
제4조	직원의 구분2
제3장 기	구 및 정원3
제5조	기구
제6조	본사
제7조	분사무소
제8조	부설기관
제9조	정원
제4장 직	위 및 직무4
제10조	직위, 보직기준 등
제11조	직무
제12조	업무분장
제13조	권한과 책임
제14조	직무의 대리
제5장 보	_최6
제15조	계약직 직원의 운영
제16조	고문 등
제17조	임시조직 등
제18조	시행세칙 등
부 최	

직제규정

1001 (17 人)	(그리 레 1호)	9007 919 레코 (그리 레909호)
	(규정 제 1호)	2007. 8.13 개정 (규정 제803호)
	(규정 제 15호)	2008. 9.11 개정 (규정 제835호)
1982. 3.16	(규정 제 19호)	2009. 1.22 개정 (규정 제843호)
1982. 5. 3	(규정 제 20호)	2009. 2.24 개정 (규정 제852호)
1983. 1.19	(규정 제 53호)	2009. 4.15 개정 (규정 제859호)
1983. 6.18	(규정 제 61호)	2009. 8.26 개정 (규정 제871호)
1984. 1.26	(규정 제 87호)	2009.10.30 개정 (규정 제882호)
1985. 7. 2	(규정 제105호)	2010. 1.20 개정 (규정 제890호)
1986.11.13	(규정 제141호)	2010.11.29 개정 (규정 제911호)
1988. 2.22	(규정 제150호)	2011. 7. 5 개정 (규정 제931호)
1988. 4.22	(규정 제158호)	2011.11.29 개정 (규정 제944호)
1988. 7.18	(규정 제162호)	2012. 6.26 개정 (규정 제962호)
1989. 4. 6	(규정 제188호)	2012. 7.31 개정 (규정 제970호)
1989. 7.31	(규정 제201호)	2012.12.27 개정 (규정 제982호)
1989.10.21	(규정 제209호)	2013.4.30 개정 (규정 제992호)
1990. 5.16	(규정 제218호)	2013.11.27 개정 (규정 제1012호)
1990.12.27 전면개정		2014.12.1 개정 (규정 제1037호)
1991. 6.12 개정	(규정 제249호)	2015.9.24 개정 (규정 제1074호)
1991.12.21	(규정 제261호)	2015.12.1 개정 (규정 제1081호)
1992.12.05	(규정 제284호)	2016.8.18 개정 (규정 제1104호)
1993. 2. 1	(규정 제288호)	2016.8.18 개정 (규정 제1104호)
1993. 7. 6	(규정 제293호)	2016.10.26 개정(규정 제1113호)
1993.12. 1	(규정 제308호)	2016.11.24 개정(규정 제1116호)
1993.12.10	(규정 제310호)	2017.10.30 개정(규정 제1150호)
1994. 4. 2	(규정 제338호)	2017.11.29 개정(규정 제1152호)
1994. 9.16	(규정 제368호)	2017.12.28 개정(규정 제1163호)
1994.10.24	(규정 제373호)	2018.3.13. 개정(규정 제1174호)
1994.12. 6	(규정 제381호)	2018.5.31. 개정(규정 제1180호)
1995. 9.19	(규정 제400호)	2018.8.30. 개정(규정 제1190호)
1996. 6.29	(규정 제420호)	2018.10.11. 개정(규정 제1195호)
1997. 5.27	(규정 제447호)	2018.12.20. 전부개정(규정 제1206호)
1998. 1.21	(규정 제464호)	2019.3.29. 일부개정(규정 제1219호)
1998. 8.19 전문개정		2019.6.27. 일부개정(규정 제1229호)
	(규정 제518호)	2019.9.26. 일부개정(규정 제1240호)
2000. 7. 1	(규정 제546호)	2020.4.23. 일부개정(규정 제1278호)
2001. 3. 3	(규정 제564호)	2020.9.24. 일부개정(규정 제1296호)
2001. 8.20	(규정 제574호)	2021.4.29. 일부개정(규정 제1331호)
2002. 3.15	(규정 제593호)	2021.6.24. 일부개정(규정 제1335호)
2003. 1.21	(규정 제627호)	2021.8.26. 일부개정(규정 제1344호)
2003. 7. 7	(규정 제640호)	2022.4.27. 일부개정(규정 제1373호)
2004. 1.28	(규정 제656호)	2022.12.30. 일부개정(규정 제1402호)
2004. 1.28	(규정 제664호)	2023.8.30. 일부개정(규정 제1439호)
2004. 9.15	(규정 제678호)	2023.9.20. 일부개정(규정 제1443호)
2005. 6. 7	(규정 제701호)	2024.5.29. 일부개정(규정 제1471호)
2005.11. 8	(규정 제722호)	2024.8.28. 일부개정(규정 제1479호)
2006. 3.20	(규정 제738호)	2024.11.26. 일부개정(규정 제1482호)
2007. 5.21 교통안	:전공단정관개정	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구·정원 및 기능 등 조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다른 법령 및 정관과의 관계)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12.30.>

[제목개정 2022.12.30.]

제2장 구성원

- **제3조(임원)**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, 상임이사 4명, 비상임이사 6명, 감사 1명을 둔다. 다만.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노동이사로 한다. <개정 2022.12.30.>
 -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,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.
 -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, 본사 본부장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이사가 아닌 본부장을 둘 수 있다.
 -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 - ⑤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1에서 규정한 상임이 사의 직제수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(직원의 구분) ① 공단의 직원은 관리직·일반직·연구교수직·별정직·실무직으로 구분한다.
 - ② 관리직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, 소관 단위조직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.
 - ③ 일반직은 3급에서 7급까지 행정직렬과 기술직렬로 분류하며, 담당직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12.30.>
 - 1. 행정직렬: 행정, 전산분야 등의 업무수행
 - 2. 기술직렬: 기술분야의 업무수행
 - ④ 연구교수직은 3급부터 6급까지 연구교수직렬로 분류하며,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.
 - ⑤ 별정직은 직급 구분이 없으며, 「임금피크제 운영규정」을 적용받은 직원으로서 담당 직무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2.12.30.>
 - ⑥ 실무직은 「실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을 적용받는 직원으로 한다. 실무직 근로자는 교통실무직과 전문실무직으로 분류하며, 담당직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

2021.6.24., 2022.12.30.>

- 1. 교통실무직: 사무, 검사 <개정 2021.06.24., 2022.12.30.>
- 2. 전문실무직: 상담, 안내, 시설, 보안, 환경 <개정 2021.06.24., 2022.12.30.>

제3장 기구 및 정원

- **제5조(기구)** ① 공단의 기구는 본사,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두며, 그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. <개정 2022.12.30.>
 - ② 제1항에 따라 별표1 기구표에서 정하는 기구 외 하부조직의 설치·개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정할수 있다. <개정 2022.12.30.>
- 제6조(본사) ① 본사에는 미래전략실, 대외협력실, 안전보건실, 감사실, 기획본부, 경영지원 본부,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, 자동차검사본부, 항공철도안전본부를 둔다. <개정 2023.9.20., 2024.11.26.>
 - ② 이사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실, 대외협력실, 안전보건실을 둔다. <개정 2022.12.30., 2023.9.20., 2024.11.26>
 - ③ 감사 직속으로 감사실을 둔다.
- 제7조(분사무소) ①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지역본부를 두며, 지역본부에 자동차검사소(이하 "검사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지역본부는 서울·경기남부·대전세종충남·대구경북·부산·광주전남·경기북부·인 천·강원·충북·전북·경남·울산·제주본부를 두며, 검사소는 지역본부 관할구역 내 시 ·군·구에 둔다.
 - ③ 경기 화성과 경북 상주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(이하 "체험교육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 - ④ 경기 화성과 경북 김천에 드론자격센터를, 경기 시흥에 드론교육센터를 둔다. <신설 2024.11.26.>
- 제8조(부설기관) 공단은 정관 제39조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둔다. <개 정 2022.12.30.>
- **제9조(정원)** ① 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별정직의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12.30.>
 - ② 삭제 <2019.6.27.>
 - ③ 공단은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8조에 따라 탄력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12.30.>

제4장 직위 및 직무

- 제10조(직위, 보직기준 등)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본사,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 임원과 직원의 각 직위별 보직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12.30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15조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30.>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30.>
- 제11조(직무)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본사,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 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, 그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9.20.>
 - 1. 미래전략실장은 미래 신사업 개발, 경영 위기관리 총괄, 이사장 경영활동지원 및 지시사항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 - 2. 대외협력실장은 교통안전 및 기관의 홍보, 국회 대응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 - 3. 안전보건실장은 안전경영체계 운영,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 <신설 2024.11.26..>
 - 4. 감사실장은 업무 및 회계 감사, 청렴경영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4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3호는 삭제 <2022.12.30.>]

[제11조제3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4호는 삭제 <2024.11.26.>]

5. 기획본부장은 기획, 예산, 직제, 경영평가, ESG, 정보화 및 자동차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5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4호는 제11조제3호로 이동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5호는 같은 조 제6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6. 경영지원본부장은 총무, 인사, 보수, 재무, 노무, 시설, 자산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6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5호는 제11조제4호로 이동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6호는 같은 조 제7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7.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은 모빌리티 안전 기획·연구, PM, DRT, 교통약자, 플랫폼 사업, V2X, 정보기술 활용·제공, 자율주행자동차 및 친환경차 정책지원, 도심항공교통 정책지원, 도로분야의 지도 및 교육, 운전적성정밀검사, 운수종사자 자격시험,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, 교통물류사업, 모빌리티 정책기획, 규제샌드박스 운영, 실증사업 지원 등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 <신설 2022.12.30.. 개정 2024.11.26.>

[종전 제11조제6호는 제11조제5호로 이동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7호는 같은 조 제8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8.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자동차검사, 자동차튜닝, 수소·CNG 내압용기검사, 기계식주차장

검사, 궤도·삭도검사, 기기정도검사, 첨단자동차검사연구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8호에서 이동. 종전 제11조제7호는 삭제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8호는 같은 조 제9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9. 항공철도안전본부장은 항공분야의 드론 등 종사자 자격관리, 안전교육,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, 철도분야의 안전관리체계(승인·검사), 설계진단, 개통 전 점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2.12.30., 2023.09.20., 2024.11.26.>

[종전 제11조제8호는 제11조제7호로 이동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9호는 같은 조 제10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10.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본부로 위임된 교통안전 및 자동차검사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, 검사소장은 지역본부 관할구역 내 검사소의 자동차 검사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10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9호는 삭제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10호는 같은 조 제11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11. 체험교육센터장은 안전운전체험 등에 관한 연구·교육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11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10호는 제11조제9호로 이동 <2022.12.30.>]

[종전 제11조제11호는 같은 조 제12호로 이동 <2023.09.20.>]

12. 드론자격센터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및 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업무를, 드론교육센터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,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<신설 2024.11.26.>

13.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·연구 업무를 관장한다.

[제11조제12호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제11호는 제11조제10호로 이동 <2022.12.30.>]

[제11조제11호에서 이동 <2023.09.20.>]

[제11조제12호에서 이동 <2024.11.26.>]

- 제12조(업무분장)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본사, 분사무소와 그 하부조직의 세부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고, 제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 하부조직의 세부 분장업무는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3조(권한과 책임) ① 모든 임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 야 하며,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
 -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본사.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과 그 하부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30.>
- 제14조(직무의 대리)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본사,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과 그 하부 조직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 내의 직제순에 따라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다만, 따로 직무를 대리할 직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12.30.>

제5장 보칙

- 제15조(계약직 직원의 운영) 이사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직종 중 특정 및 전문분야(보 직)에 한하여 계약직 직원을 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6조(고문 등)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·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고문·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7조(임시조직 등) ① 한시적인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.
 - ②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이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- 제18조(시행세칙 등)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규정 제1호, 1981.0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5호, 1981.12.23.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**제2조(시설부의 존치기간)** 제4조제5항제3호에 의거 두는 시설부의 존치기간은 1982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19호, 1982.03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0호, 1982.05.0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53호, 1983.01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설부의 존치기간) 제4조제5항제3호에 의거 두는 시설부의 존치기간은 1983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61호, 1983.06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획실의 업무분장) 전무이사 밑에 기획실의 업무관장은 전무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총무이사로 관장한다.

제3조(기능직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기능직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갖는다.

부 최 <규정 제87호, 1984.01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5호, 1985.07.0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성검사부의 업무) 운전자정밀적성검사를 위한 적성검사부의 설치는 1986년 1월 1 일자로 하되 준비를 위한 요원의 운영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1호, 1986.11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임용되어 있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전무이사가 관장하는 각 실, 부, 원의 업무는 전무이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총무이사가 관장한다.

부 칙 <규정 제150호, 1988.02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58호, 1988.04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62호. 1988.07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88호, 1989.04.0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01호, 1989.07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09호, 1989.10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18호, 1990.05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33호, 1990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직종별, 직렬별,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 감소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249호, 1991.06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61호, 1991.12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직제시행세칙) <규정 제284호, 1992.12.0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직제시행세칙) <규정 제288호, 1993.02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93호, 1993.07.0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08호, 1993.12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행정직렬 3급 및 관리원직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방송기획단의 운용) 이 규칙에 의한 방송기획단은 그 사업준비 기간중에 한하여 적용되며, 이 기간중 방송기획단은 임원급 촉탁직으로 보하고, 방송기획준비요원으로 근무중인 직원은 전직요령에 불구하고 이 개정규칙에 의거 방송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(비상계획실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일반직 2급 비상계획실장과 행정직렬 3급인 비상계획담당은 이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당해 보직 임기만료시까지 일반 직 2급 및 행정직렬 3급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310호, 1993.12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38호, 1994.04.0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68호, 1994.09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73호, 1994.10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81호, 1994.12.0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00호, 1995.09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20호, 1996.06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47호, 1997.05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·시행중인 공 단의 규정중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464호, 1998.01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80호. 1998.08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- **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인 (이사대우2, 행정직렬 6급4)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제4조(교통관광방송단 직제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교통관광방송단 직제폐지에 따른 교통 관광방송단은 이를 매각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 54인(이사급 또는 이사대우1, 방송직 또는 광고직중 1급2, 2급2, 3급4, 4급13, 5급22, 6급3, 기능직3, 관리원4)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518호, 1999.07.23.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제4조(검사소 폐쇄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폐쇄되는 태백·동해 및 남원검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9명(기술직 4급3·5급 또는 6급6)으로 하며, 그 검사소와 정원은 매각으로 사업이 폐지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제5조(교통관광방송단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교 통관광방송단의 매각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54명(이사급 또는 이사대우1, 방송직 또는 광고직 1급2, 2급2, 3급4, 4급13, 5급21, 6급3, 기능직4, 관리원4)으로 개정한다.
 - ② 제1항에 의한 교통관광방송단 운영인원은 제17조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<규정 제546호, 2000.07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564호, 2001.03.0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직종별·직렬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등으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574호, 2001.08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593호, 2002.03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칙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직종별·직렬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등으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감사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제4조의 감사선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부칙폐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1999. 7. 23 개정규칙 부칙 제4조(검사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를 폐지한다.

부 칙 <규정 제627호, 2003.01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이 규정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직종별·직렬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등으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

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640호, 2003.07.0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656호, 2004.01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664호, 2004.0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신설되는 시흥검사소는 임시조직으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678호, 2004.09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01호, 2005.06.0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전산직렬 신설로 이체되는 행정직렬의 정원 7인(3급 1, 4급 2, 5·6급 4)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등으로 정원과 일치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722호, 2005.11.0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38호, 2006.03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교통안전공단정관) <2007.05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(생략)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직제규정(제738호) 제4조제1항 중 "이사 4인"을 "상임이사 4인, 비상임이사 6인"으로 한다

부 칙 <규정 제803호, 2007.08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일치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835호, 2008.09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"교통안전연구원"은 "교통안전연구교육원"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843호, 2009.01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52호, 2009.02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59호, 2009.04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·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'12년까지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871호, 2009.08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"항공안전센터"는 "항 공안전본부"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882호, 2009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) ① 직제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"전산직렬"을 "행정직렬"로 한다.(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일원화)

② 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호중 "일반행정 등"을 "일반행정, 전산분야 등"으로 하고, 제2호를 "삭제"한다.

부 칙 <규정 제890호, 2010.01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) ① 직제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중 "본사, 자동차성능연구소, 부설기구,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(이하 "체험센터"라 한다)"를 "본사, 자동차성능연구소, 부설기구"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"본사, 자동차성능연구소, 부설기구, 체험센터"를 "본사, 자동차성능연구소, 부설기구"로 한다.

제7조 제2항 중 "각 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하고, 제3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, "의거"를 "따라"로 한다.

별표1 중 "철도안전본부"와 "항공안전본부"를 폐지하고, "철도항공안전본부"를 신설하며, "교통안전연구교육원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"으로, 지사조직인 "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"를 삭제하고, "녹색교통안전연구원" 하부조직으로 신설한다.

별표2, 3 중 "철도안전본부장" 또는 "항공안전본부장"을 삭제하고, "철도항공안전본부장"을 신설하며, "교통안전연구교육원장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장"으로, "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"를 폐지하고, "녹색교통안전연구원" 하부조직으로 신설한다.

별표4, 5 중 "철도안전본부"와 "항공안전본부"를 폐지하고, "철도항공안전본부"를 신설하며, "교통안전연구교육원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"으로, 지사조직인 "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"를 삭제하고, "녹색교통안전연구원" 하부조직으로 신설한다.

②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"철도안전본부" 또는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부"로, "교통안전연구교육위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"으로 한다.

③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 제1호 중 "연구교육원장"을 "연구원장"으로 한다.

④ 비정규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부"로 한다.

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부"로 한다.

⑥ 대중교통현황조사협의회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중 "교통안전연구교육원장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장"으로 한다.

⑦ 기숙사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호 중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부"로 한다.

⑧ 당직근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4조 제1항 제3호 중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부"로 하고, "항공안전본부장"을 "철도항공안전본부장"으로 하다.

⑨ 예산회계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1항 제3호, 제26조의 2 및 제39조 제1항 중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 부"로 한다.

⑩ 교육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 중 "교통안전연구교육원장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장"으로 한다.

①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업무담당자 교육훈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"항공안전본부"를 "철도항공안전본부"로 한다.

② 해외통신원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, 제4조 제2항, 제6조 제1항 제1호, 제8조 제2항,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"교통안전연구교육원장"을 "녹색교통안전연구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911호, 2010.11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31호, 2011.07.0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44호, 2011.11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신규 증원된 40인(2급 1, 3급 1, 4~6급 38)에 대한 정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직원의 직종·직렬 및 기능직·관리원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직원의 직종·직렬 구분 및 기능직·관리원 신분은 인사규정 등 그에 관한 다른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갖는다.

제4조(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기구·부서·직위명칭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931호, 2011.07.0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44호, 2011.11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62호, 2012.06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70호, 2012.07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제규정 및 지침이 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규정 중 지부는 지사로 지부장 은 지사장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982호, 2012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92호, 2013.04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12호, 2013.11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37호, 2014.12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「별표2」개정 정원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에서의 의제)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 중 기구·직위명칭은 이 규정에 따른 해당 기구·직위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1074호, 2015.09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「별표2」개정 정원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81호, 2015.12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에서의 의제)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 중 기구·직위명칭은 이 규정에 따른 해당 기구·직위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1104호, 2016.08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에서의 의제)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 중 기구·직위명칭은 이 규정에 따른 해당 기구·직위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1113호, 2016.10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16호, 2016.11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에서의 의제)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 중 기구·직위명칭은 이 규정에 따른 해당 기구·직위로 본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150호, 2017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「별표2」개정 증원표에서 신규 증원된 49명(3급 3, 4~6급 46)에 대한 정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1152호, 2017.11.29.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63호, 2017.12.28.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74호, 2018.03.13.>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80호, 2018.05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에서의 의제)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 중 기구·직위 명칭은 이규정에 따른 해당 기구·직위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1190호, 2018.08.30.>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95호, 2018.10.11.>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신규 증원된 81명 (2급 4명, 3급 11명, 4~6급 66명)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06호, 2018.12.20.>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19호, 2019.03.29.>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29호, 2019.06.27.>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40호, 2019.09.26.>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78호, 2020.04.23.>

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 <규정 제1296호. 2020.09.24.>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31호, 2021.04.29.>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35호, 2021.06.24.>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44호, 2021.08.26.>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73호, 2022.04.27.>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02호, 2022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 2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자연 감소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규정 제1439호, 2023.08.30.>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43호, 2023.09.20.>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471호, 2024.05.29.>

이 규정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79호, 2024.08.28.>

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82호, 2024.11.26.>

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직제규정 [별표1] <개정 2022.12.30., 2023.08.30., 2023.09.20., 2024.11.26>

기

구

₩

이사회 이사장 감사(비상임) 감사실 미래전략실 대외협력실 안전보건실 모빌리티 항공철도 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자동차검사본부 교통안전본부 안전본부 [부설기관] 자동차 안전연구원 [분사무소] 교통안전 지역본부 드론자격센터 드론교육센터 체험교육센터 검사소(센터)

■ 직제규정 [별표2] <개정 2021.6.24., 2022.12.30., 2023.08.30., 2024.5.29., 2024.8.28>

정 원 표

(단위 : 명)

구	분	정 원
7	4	1,849.3
임	원	5
	소 계	1,528
	1급	26
7] 0]	2급	83
직 원	3급	235
	4~6급	1,162
	7급	22
실무	구직	316.3

[※] 실무직 정원은 시간제 근로 포함.